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나.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다.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 라.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갖춘 경우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3.1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상품²
-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² 이 장의 목적상, “식물성 상품”은 식물, 균류, 조류 및 이들의 상품을 포함한다.

-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의 바깥 한계 내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채집, 포획, 양식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
- 사. 보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 2)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카.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상품, 그리고
-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이 조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된다.

가.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조정가치 (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 (VNM)}}{\text{조정가치 (AV)}} \times 100$$

나.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 (VOM)}}{\text{조정가치 (AV)}}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며, 아래와 같다.

- 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 또는
- 나.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제3.4조에 의하여 결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를 포함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제3.4조에서 결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 2.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된다.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모든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목적상, 관세평가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제 3.4 조 재료의 가치

- 1. 제2항을 조건으로, 제3.3조에 언급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 보험료포함가격, 또는
 - 나.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 2. 제1항의 목적상, 제1항에 따라 포함된 경우, 다음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

- 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다.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가공 비용
3. 제4항을 조건으로, 제3.3조에 언급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 보험료포함가격
 - 나.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그 재료의 가치, 또는
 -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및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4. 제3항의 목적상, 제3항에 따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은 원산지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다.
-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그리고
 -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제 3.5 조 누적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6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비원산지재료가 이 조의 원산지로 결정되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0701호부터 제0710.10호까지, 제0713호부터 제0714호까지,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그리고 제0813.10호부터 제0813.40호까지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7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다.
 -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

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을 사용한 경우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 3.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출 및 분류되고, 수입 시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다.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 라.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9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3.10 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1.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란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3.11 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간접재료는 원산지재료로 취급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2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 또는 처리 중 하나 이상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 마.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사. 분해, 또는
 - 아.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없는 상품의 단순한 재분류
2.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과 처리는 그 상품에 가하는 공정과 처리가 제1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

제 3.13 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14 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³,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³ 이 항의 목적상, “재라벨링”이란 수입 당사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라벨을 붙이는 것을 말하며, “재포장”이란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장 공정을 말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3.15 조 원산지 증명서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특혜관세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은 원산지 증명서로 뒷받침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 가. 그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 나.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만들어지고 여러 종류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 다.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수단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 라. 영어로 작성되고 부속서 3-다의 지침에 규정된 자료요소를 포함한다.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은 부속서 3-라에 따른다.
3.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나. 생산자가 제공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
4. 이 조 내의 어떠한 규정도 상품의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 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그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 수입
6.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 후 최소 2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7.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발효일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제 3.16 조 권한 있는 기관

1. 제3.15조에 더하여, 호주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 신청서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다.
2. 호주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 매 신청마다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 나.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빙 서류와 일치한다는 것
3. 호주는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증빙서류를 증명서 발급일 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문서는 디지털,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보관될 수 있다.
4. 호주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한다.
5. 호주는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인장 날인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세부사항을 한국에 통보한다.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히 통보한다.

제 3.17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부여한다.
 - 가.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 다. 수입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세관 수입 신고 당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 라.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수입자가 신청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제 3.18 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 가. 원산지 증명서 및 적절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 나. 신청된 특혜관세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제 3.19 조 원산지 증명서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관세가격이 한국의 경우 미화 1,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000 달러이나, 각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또는
- 나.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수입의 경우

다만, 수입이 제3.15조 및 제3.17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20 조 불일치 및 변형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서류상 사소한 표기의 오류나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히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부속서 3-라에 규정된 표준서식에서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변형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는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자료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 3.21 조 수출에 관한 의무

1.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에 의하여 그 관세행정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였고,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서를 제공한 모든 인에게 그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허위 원산지 증명서 또는 문서의 발급에 대한 벌칙을 유지한다.

제 3.22 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년간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서를 제공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한다. 그리고
 - 나.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간,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3.23 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 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검증 요청
 -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 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의 지원 요청, 또는
 - 마.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제1항 가호, 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관세행정기관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서면 요청일부터 30일 간 응답할 기간을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3. 이 조와 제3.24조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고 수출 당사국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전달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특혜관세대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의 조치를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절차에 명시된 기간 내에 완료한다. 관세행정기관은, 검증 조치를 완료하는대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결정과 결정의 근거가 된 법적 근거와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한다. 검증 방문을 행한 경우, 관세행정기관은 수출 당사국에도 그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제 3.24 조 검증 방문

1. 제3.23조제1항마호에 따른 검증 방문 수행 이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들의 사업장 검증 방문을 할 것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
2.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가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동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요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요청을 하는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 나. 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 당사국 내의 상품 수출자의 이름
 - 다. 서면요청이 이루어진 날짜
 - 라. 제안된 방문 날짜와 장소
 - 마.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검증의 대상인 상품의 특정 참조를 포함한 제안된 방문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 바. 방문에 참여할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4.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이 조에 따라 검증 방문의 요청 시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공무원은 참관자로서 검증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25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기록 또는 문서의 유지를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3조제2항에 따라 그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라. 제3.24조제1항에 따라 검증 방문을 위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4조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3.23조제1항마호에 언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 생산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3.23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조치의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상품이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특정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중지 또는 거부권이 적용된다.

제 3.26 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 3.27 조 비밀유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11조(비밀유지)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3.28 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 3.29 조 불복청구 절차

이 장에 따른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 권한은, 제4.8조(불복청구 절차)에 따라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여된다.

제 3.3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치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상품의 가치를 말한다.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상품을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보험, 포장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징을 보유하여 동일한 종류와 상업적 품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동일하거나 호환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모되고 그 상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분류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덧사냥, 수렵, 제조,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공정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란 관세 산정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양허표 두주

1. 특정 호(4단위) 또는 소호(6단위)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2.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4.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5. 이 양허표 내의 류 주해는, 특정한 제외가 있지 아니하는 한, 해당 류 또는 류들 내의 모든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된다.
6.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 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 류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8. 이 부속서 3열의 목적상,
 -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관세분류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관세분류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관세분류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될 것을 말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3.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이란 제3.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2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한반도의 여건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⁴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중 하나로써 위원회에서 확인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1. 발급 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5.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6. 물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 *선택사항
10. 서약, 그리고
11. 원산지 증명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그리고 발급 일자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호주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명료하고 충분히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증명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3란: 이 증명서가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호주로 수입될 제6란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날짜는 일/월/연도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5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6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

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8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WO, PE, PSR 또는 기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이 장과 부속서 3-가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WO: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PE: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상품이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부여받은 경우

제9란: 이 란은 제6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된 비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10란: 신고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쪽으로 구성된다.

제11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